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8/2563호

분석과 개발을 위해 수입을 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입세 면제 권리와 혜택 제공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종합안내사항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과 규율에 의거한 내용은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제16항, 18항, 30/1항에 따라 투자촉진위원회는 2017년 3월 14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1/2560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림

1. 투자촉진을 받는자는 실험등을 포함한 분석과 개발을 위해 수입을 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수입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건당 1년을 받을수있으며 수입세를 면제 권리를 받는 물품의 경우 기계나 재료, 자재등이 수입세 면제 권리를 받고 있지 않는것들이어야 하고 종류, 양, 기간, 조건, 정해놓은 방법들을 따라야 함
2. 권리와 혜택을 받는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범위의 분석과 개발이 필요함
 - (1) 분석과 개발분야로 예를들면
 - 분석과 개발 사업
 -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 테크놀로지 목표개발 사업
 - (2) 분석과 개발 강제 시행에 대한 조건이 있는 사업
 - (3) 투자가 있을경우 권리와 혜택을 최고로 부여받을수있는 조건으로 정해진 사업이나 분석과 개발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
 - (4) 분석과 개발을 통한 개발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프로젝트의 가치를 따르는(Merit-based Incentives)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
 - (5) 분석과 개발의 투자촉진 규율에 따라 투자촉진을 받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2020년 4월 13일부터 적용

2020년 5월 14일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